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35 발의연월일: 2024. 11. 25.

발 의 자:김위상・김선교・우재준

박준태 · 김상훈 · 박정하

김형동 · 임이자 · 서범수

김용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기업들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음.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등 자금을 보조 또는 융 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후 구매보조금을 지 원하고 있으며, 자동차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 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하지만, 수소자동차, 수소건설기계,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자 동차와 달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, 현행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도 부정한 방법으로 평 가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미비 한 상황임. 또한, 수소충전소 구축 시 설치계획의 승인, 인ㆍ허가 등의 의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수소충전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대상을 수소자동차, 수소건설기계,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고(안 제58조의2제1항 신설)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(10억원 한도)의 과징금을 부과(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)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 또한,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의 승인과 인·허가 등의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을 삭제(법률 제1808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)하여 수소충전소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.

이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과태료로 낮춰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(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)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3항제1호 후단 중 "제58조의2제1항"을 "제58조의3제1항"으로하고, 같은 조 제11항 중 "이하 이 조에서"를 "이하"로 하며, 같은 조 제19항을 삭제한다.

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13까지로 하고,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2(저공해자동차등 성능평가) ①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성능평가 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

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
제58조의4(종전의 제58조의3)제1항 중 "제58조의2제1항"을 "제58조의3 제1항"으로 한다.

제58조의13(종전의 제58조의12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(종 전의 제58조의12) 제2항 중 "제58조의11제1항"을 각각 "제58조의12제1 항"으로 한다.

제91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.

제94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5 및 제1호의6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호의5 (종전의 제1호의4) 중 "제58조의2제5항"을 "제58조의3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"제58조의5제1항"을 "제58조의6제1항"으로 한다.

1의4.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

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

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	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
① · 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	③
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	
보급,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	
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	
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	
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	
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	
거나 융자할 수 있다.	
1.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	1
설기계를 구입하는 자. 이 경	
우 <u>제58조의2제1항</u> 에 따른 자	<u>제58조의3제1항</u>
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	
부,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	
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	
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	
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	
적으로 할 수 있다.	
1의2. ~ 6. (생 략)	1의2. ~ 6. (현행과 같음)
④ ~ ⑩ (생 략)	④ ~ ⑩ (현행과 같음)
⑪ 저공해자동차, 저공해건설기	①
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	

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 동차 및 건설기계(<u>이하 이 조에</u> 선 "저공해자동차등"이라 한다) 의 소유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 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에게 저공해 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(① ~ (⑧ (생 략)

①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<신 설>

<u>০</u>] চ্ট্ৰ-
① ~ ⑱ (현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
제58조의2(저공해자동차등 성능평가) ① 환경부장관은 제58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 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 의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 가 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 성능평가 시 사실과 다른 서

제58조의2 (생략)

제58조의3(저공해자동차 보급실 전의 이월·거래 등) ① 자동차 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 동차·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

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수 없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·정도 등 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 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 다.

<u>제58조의3</u> (현행 제58조의2와 같음)

제58조의4(저공해자동차	보급실
적의 이월ㆍ거래 등) ①	
<u>제58</u> 조의3제1항	

는	コ	초회	가분·	을 [구음	연도	부	터
환>	경투	니렁 <u>(</u>	으로	정ㅎ	}는	기간	동	안
0] 4	월ㅎ	나여	사용	하기	식나	자동	차.	판
매 :	자 :	간에	거i	개할	수	있다	•	

②・③ (생략)

제58조의4 ~ 제58조의11 (생 략)

제58조의12(인·허가 등의 의제)
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
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·신고·지정·인가·협의 등(이하 "인·허가 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·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- 1. ~ 14. (생략)
- ②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 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④ (생 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58조의5 ~ 제58조의12 (현행
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11까지
와 같음)
제58조의13(인·허가 등의 의제)
① 제58조의12제1
ठॅ)
1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 <u>제58조의12제1</u>
<u> ठॅ</u> }
③·④ (현행과 같음)
· · ·

- - 1. (생략)
 - 2.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
- 제9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~ 1의3. (생 략) <신 설>
 - 1의4. <u>제58조의2제5항</u>을 위반하 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 한 자

<u>1의5</u>. (생략)

- 2. · 3. (생략)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4. (생 략)
- 5. <u>제58조의5제1항</u>에 따른 저공 해자동차의 구매·임차 비율

세91소의4(일적)
1. (현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레이4구/코 티 크) (1)
제94조(과태료) ①
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
1의4.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
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
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
1의5. 제58조의3제5항
1910. <u>/1100-11971108</u>
<u>1의6</u> . (현행 제1호의5와 같음)
2. · 3. (현행과 같음)
2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58조의6제1항
0. <u>100000 10 11 0</u>

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 ·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~ ⑥ (생 략)

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

제2조(유효기간) 제58조의11 및 <삭 제>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6조(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) 수소연료공급시 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58조의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계획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 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일부개정법률 부칙

<삭 제>